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세칙

제정 2007. 11. 28.

개정 2009. 12. 4.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경희법학연구소 규정에 의하여 경희법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연구활동에 있어 건전한 학술연구환경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설치한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조(기능) 위원회는 경희법학연구소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이 모범적인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로 선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타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연구윤리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인 이내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당해 사건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보자가 허위 등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①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시에는 관련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재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본 세칙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제11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